

공개된 장소에서의 역학조사는 사생활 침해

✎ 김민중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례4 | 역학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침해

가혼 감염인 B씨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을 하면서 불愉快的 사생활침해를 받았다. 해당 보건소 보건지도과 사무실 한쪽에 다른 직원들도 있는 완전히 공개된 공간에서 부인과 함께 상담을 하여 B씨는 황당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후에 상담할 때에는 보건소 직원에게 말하여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였으나, 보건소 담당직원은 진지한 기색도 없이 노골적으로 어떻게 감염되었느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랄도 하나?"는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였다.

[사례제공: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러 법률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

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는 사적 영역이란 친밀한 범위내의 영역, 예를 들면 가족 및 가정이나 친지·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생활영역이나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적인 정보영역을 가리킨다. 특히 성적인 사항은 인간자유 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으로서 절대적 보호를 받는 '내밀영역'(內密領域)에 해당한다고 본다.

수치심 유발가능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감염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호·관리가 요청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국가가 감염인이나 그 가족을 보호·관리할 때에는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비밀을 지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법률상 감염인이나 그 배우자와 동거가족에 대하여 에이즈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0조). 그리고 역학조사의 내용으로 인적사항(예컨대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직업,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성명), 가족사항(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론 역학조사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무다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인에게 선호하는 성행태, 예를 들어 항문성교를 선호하는지, 오럴섹스를 선호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체성이나 성행태에 관한 질문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체성이나 성행태에 관한 질문은 감염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감염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학조사라도 성행태 등 사생활은 신중히 다루어야

보건소에서 감염인에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면담장소를 가능한 한 보건소 내의 상담실과 같이 보안이나 비밀의 유지가 가능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특별히 감염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면담하여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한 상담 시에는 보건소의 담당직원은 감염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의 유지·보호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지어 감염인 본인에게도 비밀보장에 대하여 확약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B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역학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공개된 장소에서의 면담을 통하여 B씨의 성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른 직원에게도 알려지고, 그 직원의 비밀공개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면 B씨는 국가나 그 보건소 담당직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비록 선호하는 성행태에 질문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직원이 감염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감염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질문을 직접 하는 행위는 감염인의 내밀영역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보건소 직원은 감염인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가 당연히 요구되고, 역학조사의 내용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역학조사의 사항 중 특히 개인의 은밀한 비밀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사건을 보면 B씨는 보건소 담당직원이 진지한 기색도 없이 노골적으로 여러 내밀한 질문을 하여 수치심을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물론 개인의 성적 성향과 같은 사항은 내밀영역으로서 제한 없이 보호되어야 하나, 에이즈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행태를 묻은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성행태와 같은 질문은 감염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염인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감염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호·관리가 요청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국가가 감염인이나 그 가족을 보호·관리할 때에는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비밀을 지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